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07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1566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0726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지연, 정형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김윤섭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55,051,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1. 4. 19. 접수 제23473호로 마친 2021.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10. 8. 접수 제56335호로 마친 2021. 10.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 B의 부(父)인 망 E(2021. 3. 17.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계모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 B 운영의 위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9. 피고 B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 48,557,702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가 위 퇴직금 전액을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한편 망인도 2008. 6. 1.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2. 피고 B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 34,488,338원을 지급받았고, 2020. 11. 19. 망인이 위 퇴직금 중 34,480,000원을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1. 6. 10. 1,500,000원, 2021. 7. 12. 2,000,000원, 2021. 8. 10.

1,500,000원, 합계액 총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21. 4. 1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1. 10. 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및 피고 B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으로서 다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8,557,702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망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서 다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4,480,000원을 망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망인이 2021. 3. 17. 사망하여 원고는 망인의 위 반환채권 중 3/9 지분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2021. 4. 17. 원고에게 총 60,051,035원[= 48,557,702원 + (34,480,000원 × 3/9)]을 월 1,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총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051,035원(= 60,051,035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에도 그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C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각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약정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21. 4. 17. 향후 월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1. 6. 10.부터 8. 10.까지 총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초 피고 B이 원고 주장의 총 60,051,03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분할 지급을 위해 위 5,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B은 2021. 4. 17.자 원고와의 대화에서 일관하여 앞으로 원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당초 2020. 11. 19.경 원고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60,051,035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 약정금 60,051,035원이 애초 원고의 퇴직금, 망인의 퇴직금 중 원고의 상속분 합계책임을 이유로 피고 B에게 고용주로서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2020. 11. 12. 망인에게 이미 망인이 2008. 6. 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데에 따른 퇴직금 34,488,338원, 2020. 11. 19. 원고에게 이미 원고가 2013. 11. 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데에 따른 퇴직금 48,557,702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다만 2020. 11. 19.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아버지인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 각 퇴직금 수령액 중 대부분 금액을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현재까지 원고와 망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그와 같은 원고와 망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조달이 원고 내지 망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 B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2021. 4. 17. 향후 월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에게 2021. 4. 19. 같은 일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2021. 10. 8. 같은 일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통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지]

목 록

1.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85.9682㎡, 1층 335.6024㎡, 2층 316.3824㎡, 3층 398.6659㎡, 4층 398.6659㎡, 5층 394.4659㎡, 6층 394.4659㎡, 7층 394.4659㎡, 8층 394.4659㎡, 9층 394.4659㎡, 10층 394.4659㎡, 11층 394.4659㎡, 12층 394.4659㎡, 13층 394.4659㎡, 14층 394.4659㎡, 15층 394.4659㎡, 16층 394.4659㎡, 17층 227.6589㎡, 18층 227.6589㎡, 19층 227.6589㎡, 20층 227.658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양산시 대 5463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9,576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 54630.4분의 41.93

2. 경상남도 양산시

대 197㎡

끝.

